

수신 : 논산시의회 의장

2020. 3. 24.

**제목 : 「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 발의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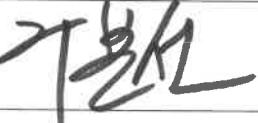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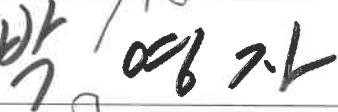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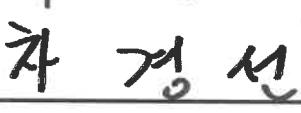
위 건에 대하여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 및 「논산시의회 회의규칙」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「논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을 붙임과 같이 발의 합니다.

붙임 : 발의 의원 서명날인 명단 및 조례안 1부. 마침.

**발의자 : 구본선 의원 외 11인**

-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-

## 발의 의원 서명부

성명	서명 · 날인	비고
김진호		
박승용		
조배식		
김만중		
구본선		
이계천		
박영자		
서원		
조용훈		
김남충		
최정숙		
차경선		



의안번호

제 36 호

##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발 의 자	구본선 의원 외 11명
발의연월일	2020. 3. 24.

#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의안호	제36호
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0. 3. 24 .  
대표발의자 : 구본선  
공동발의자 : 김진호 박승용  
조배식 김만중  
이계천 박영자  
서원 조용훈  
김남충 최정숙  
차경선

## 1. 제안이유

- 재난 및 감염병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해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,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사업 및 홍보(안 제3조~제4조)
- 다. 협력체계 구축·운영(안 제5조)
- 라. 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(안 제6조)
- 마. 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(안 제7조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

-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(일부개정, 법률 제16652호, 시행 2020. 2. 21.)
-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불임 참조(비용추계서)

다. 기타

- 1) 조례안 : 별첨
- 2) 예고기간 : 2020. 3. . ~ 2020. 3. .( 일간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36 호

# 논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에 따라 논산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, 소상공인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주요 시책 추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“소상공인” 이란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 및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로서, 논산시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운영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.

제3조(지원사업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1. 창업 지원 : 법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
2. 경영안정 등 지원 : 법 제9조 각 호에서 정한 사업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홍보·마케팅 등 사업
3. 논산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의 지원
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
5. 그 밖에 소상공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항

제4조(홍보)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 시책과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 및 축제 등에 대하여 논산시보 또는 논산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.

제5조(협력체계 구축·운영) 시장은 소상공인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

기 위하여 시·군 및 소상공인연합회, 관련 전문 기관·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·운영할 수 있다.

제6조(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) 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단체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.

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관련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
제7조(소상공인 창업지원센터)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논산시 소상공인창업지원센터(이하 “센터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② 시장은 센터에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업의 일부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.

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④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.

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」과 「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제8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부서		성명
입안자	논산시의회 의원	구본선 의원 외 11명

## 불임 1

## 비용추계서

### 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3조(지원내용)

### 2. 비용추계결과

#### 가. 추계의 전제

- 제3조(지원내용)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소상공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.
  - 4.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

#### 나. 추계결과

- 긴급지원금 : 1,000,000원 × 6,400명 × 1회 = 6,400,000천 원

**□ 「지방자치법」**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**□ 「소상공인기본법」**

제2조(정의) ①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  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-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. 다만,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**□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**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소상공인”이란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.

1.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
2.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

제8조(소상공인 창업 지원)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7. 7. 26.>

1.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
2.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·자문 및 교육
3. 자금조달, 인력, 판로 및 사업장 입지(立地)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
4.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12조의2(재해·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) 정부는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비 등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## 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

제3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재난”이란 국민의 생명·신체·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.
  - 가. 자연재난: 태풍, 홍수, 호우(豪雨), 강풍, 풍랑, 해일(海溢), 대설, 한파, 낙뢰, 가뭄, 폭염, 지진, 황사(黃砂), 조류(藻類) 대발생, 조수(潮水), 화산활동, 소행성·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·충돌,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
  - 나. 사회재난: 화재·붕괴·폭발·교통사고(항공사고 및 해상사고를 포함한다)·화생방사고·환경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와 에너지·통신·교통·금융·의료·수도 등 국가기반체계(이하 “국가기반체계”라 한다)의 마비,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감염병 또는 「가축전염병 예방법」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확산, 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미세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